

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서면-2026-법인-1234, 2026. 5. 13.)

I. 취지

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,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.

II.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

(사실관계)

- ✓ 질의법인은 ○○ 의료·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.
- ✓ 질의법인은 2017년 특수관계인 이사가 1/5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, 이에 질의법인이 5%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법인 주식 50%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음.
- ✓ 질의법인은 위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금(이자 포함)을 ○○ 등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, 이자비용의 증가로 공익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설립자와 ○○그룹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기부금을 받고자 함.

(질의의 요지)

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, 해당 차입금 상환액이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.

III. 회신 요지

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,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. 즉,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부담한 차입금을 출연재산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임.

IV. NOTE

본 사안은 공익법인이 이미 부과받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, 이후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을 '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'으로 보아 사후관리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. 국세청은 그 차입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, 출연재산을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 제 2 항 제 1 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 년 이내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본 회신은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등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 납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지출을 일반적인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다만, 출연재산의 사용처가 차입금 상환인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차입금 발생원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 제 1 항 및 제 9 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는 점, 출연재산이 그 차입금 상환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도록 차입·납부·상환 관련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
[관련 법령]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6. 12. 20. 법률 제 1438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 48 조(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)

-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 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 등"이라 한다)의 100 분의 5(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10)를 초과하는 경우(제 16 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

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

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
3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

제 48 조(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)

- ① 세무서장 등은 제 1 항 및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 제 9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 1.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 5 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제 38 조(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)

- ① 법 제 48 조 제 2 항 제 1 호·제 7 호 및 같은 조 제 11 항 제 1 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 48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(이하 이 조에서 “출연받은 재산”으로 한다)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.

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56 조 제 11 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
2.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,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